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전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8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김민전·서지영·박정하

박덕흠 • 이헌승 • 김용태

박수민 • 이철규 • 김대식

인요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함.

다만,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 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,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·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됨.

이에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,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이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,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	제28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
한 신고의무) ① ~ ④ (생	한 신고의무) ① ~ ④ (현행과
략)	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
	기관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
	발생한 사실을 소속 학교의 장
	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, 제2
	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
	학교의 장이 그 사실을 지역교
	권보호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하
	는 경우, 제1항에 따라 신고를
	한 자 또는 그 피해교원은 교
	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
	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
	<u>릴 수 있다.</u>